

하남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339
----------	------

제출연월일 : 2015. 5. 19.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폐지이유

- 가. 주택개량사업지원 및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던 하남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차입금 완납 및 일반회계로 전환되었고,
나. 은행차입금 상환완료 후 남은잔액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하고 공급예금계좌도 해지되었으므로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3. 폐지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기간 : 2015년 3월 23일 ~ 4월 13일(21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협의기간 : 2015년 3월 23일 ~ 4월 13일(21일간)

나. 협의결과 : 의견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하남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주택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주택과장 정상원
	팀장 직위·성명	주택행정팀장 백양기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백양기 (790-5203)

《폐지 조례》

■ 하남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제3항의 규칙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범위등의 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사업 및 주택개량을 위한 시 직영시멘트제품 가공 공장의 설치 운영 (이하 “공장”이라 한다)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이축 (공업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설치)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 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주택금고설치)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 행”이라 한다)의 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제2장 농어촌 주택사업

제5조(세입)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세출)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 (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자금운영) ①자금은 이를 시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 주택사 업을 행하게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 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 촌 주택개량사업자금에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신청)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의 보조) ①시장은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이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붙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해하지 아니한 때

③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붕개량사업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2. 주택개량사업

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 율 : 10%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융자금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 체증상환

다.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추가융자금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라. 변소개량융자금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분할 상환

마. 태양열 이용시설융자금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분할 상환

3. 태지조성사업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분할 상환

④제3항제2호가목규정에 의거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2호 나 내지 마목 및 제3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시행한 융자사업중 할부금 상환이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시중 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3장 시 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

제10조(세입세출) ①시직영 시멘트 가공공장 운영사업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공장제품의 판매 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시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의 세출은 재경비 기타 주택개량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장 국민주택사업

제11조(세입세출) ①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의 수익금, 공채 소화 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등으로 한다.

②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및 단지내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12조(융자조건) 국민주택의 기금의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운용조건에 의한다.

제13조(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 ①입주자로부터의 할부금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상환한다.

②할부 상환금이 연체되었을 경우 한국주택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14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보험가입 및 신용보증 준비금) ①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 차입하여 융자지원한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주자가 보험에 가입시 시장을 수취인으로 하지 않고 (거부할 경우 포함) 본인을 수취인으로 할 경우 시장은 보험청구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차입하지 아니하고 국민주택기금이외의 주택자금에서 차입하여 융자 지원한 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는 주택은행정 제31조 및 신용보증준비금관리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준비금을 징수하여 주택은행에 납부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 (자금의 전용금지)농어촌 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준용규칙) 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